

[특집]

20세기 교회 문헌에서의 평신도의 모습

■
전 두 병

[서울대학교구 법원 재판관·서초동 성당 부주임신부]

서 론

1. 1917년 교회법전에서의 평신도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의 평신도
3. 1983년 교회법전에서의 평신도
4. 1983년 교회법전 이후

결 론

서 론

“현재와 미래의 복음화에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는 이 활동을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 백성’의 본성에 속하고, 또 복음화 사명 완수에 필요하기 때문이다.”¹⁾

이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평신도 사도직이 현대 교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평신도 사도직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은 날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후속 문헌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세기 동안 가톨릭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어떻게 이해되었고, 그들의 역할이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황청 성직자성 외,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에 관한 훈령」,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97.7.

1. 1917년 교회법전에서의 평신도

1917년 교회법전에서 평신도는 그리 비중 있게 다루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몇몇 조항에서 평신도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언급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교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평신도보다 성직자에 더 초점이 맞춰진 당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평신도에 대해서 1917년 법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1.1. 평신도에 관한 개념

1917년 법전에는 평신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다만, 평신도는 성직자와 구분되며, 교계적인 구조에 따라 성직자와 수도자는 평신도보다 우위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²⁾ 이러한 개념은 성예로니모부터 비롯되어 그라시아노 법령집으로 이어지는 전통에 따른 것이다. 즉 평신도의 신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 당시까지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³⁾

2) Cfr. can.107 del Codice del 1917: “*Ex divina institutione sunt in Ecclesia clerici a laicis distincti, licet non omnes clerici sint divinae institutionis; utriusque autem possunt esse religiosi*”; cfr. can.108 del Codice del 1917: “§1. *Qui divinis ministeriis per primam saltem tonsuram mancipati sunt, clerici dicuntur. §2. Non sunt omnes in eodem gradu, sed inter eos sacra hierarchia est in qua alii aliis subordinantur. §3. Ex divina institutione sacra hierarchia ratione ordinis constat Episcopis, presbyteris et ministris; ratione iurisdictionis, pontificatu supremo et episcopatu subordinato; ex Ecclesiae autem institutione alii quoque gradus accessere*”; cfr. can. 491 del Codice del 1917: “§1. *Religiosi praecedunt laicis; religiones clericales, laicalibus; canonici regulares, monachi; monachi, ceteris regularibus; regulares, Congregationibus religiosis; Congregationes iuris pontificii, Congregationibus iuris dioecesani; in eadem specie serventur praescriptum can.106, n.5. §2. At clerus saecularis praecedit tum laicis tum religiosis extra eorum ecclesias atque etiam in eorum ecclesiis, si agatur de religione laicali; Capitulum vero cathedrale vel collegiale eisdem praecedit ubique locorum*”; cfr. can.948 del Codice del 1917: “*Ordo ex Christi institutione clericos a laicis in Ecclesia distinguit ad fidelium regimen et cultus divini ministerium.*”

3) Cfr. G. Dalla Torre, *I laici*, in: *Aa. Vv., La nuova legislazione canonica*, Roma, 1983, p.155.

1.2.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1917년 법전에서는 평신도에 대해 제2권 “대인법”(De personis)의 제3장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2개 조문에서 다루고 있고, 나머지 42개의 조문은 신자 단체에 관한 내용이다. 즉 실질적으로 평신도에 관해 다루고 있는 조항은 제682~683조라고 할 수 있다.

제682조는 평신도의 권리에 관한 조항으로서, 그들의 영적 선익, 특히 구원에 필요한 도움을 교회법 규정에 따라 성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⁴⁾ 반면에 제683조는 평신도에 관한 금지 규정으로서, 허가받지 않고 교회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⁵⁾

이 밖에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는 모두 6개 조문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된다. 먼저 제373조 3항은 성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성직자의 형사소송을 제외하고, 평신도가 교회 내 소송에서 공증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⁶⁾ 다음으로 제1223조 1항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평신도들도 자신의 장례를 위한 장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⁷⁾ 세 번째로 제1592조는 성직자의 임용이 적절치 않을 경우, 교회 내 소송에서 평신도가 송달관과 집행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⁸⁾ 네 번째로 제1448조는 교회록을 창설한 신자와 그

4) Cfr. can.682 del Codice del 1917: “*Laici ius habent recipiendi a clero, ad normam ecclesiasticae disciplinae, spiritualia bona et potissimum adiumenta ad salutem necessaria.*”

5) Cfr. can.683 del Codice del 1917: “*Non licet laicis habitum clericalem deferre, nisi agatur vel de Seminariorum alumnis aliisque aspirantibus ad ordines de quibus in can.972, § 2, vel de laicis, servitio ecclesiae legitime addictis, dum intra eandem ecclesiam sunt aut extra ipsam in aliquo ministerio ecclesiastico partem habent.*”

6) Cfr. can.373 §3 del Codice del 1917: “*Si clerici desint, possunt e laicis assumi; sed notarius in criminalibus clericorum causis debet esse sacerdos.*”

7) Cfr. can.1223 §1 del Codice del 1917: “*Omnibus licet, nisi expresse iure prohibeantur, eligere ecclesiam sui funeris aut coemeterium sepulturae.*”

8) Cfr. can.1592 del Codice del 1917: “*Laici ipsi sint, nisi prudentia in aliqua causa suadeat ut ecclesiastici ad id muneris assumantur; quod vero ad eorum nominationem, suspensionem et revocationem attinet, eadem servantur regulae quae pro notariis can.373 statutae sunt.*”

승계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고,⁹⁾ 다섯 번째로 제1183조 1항은 교회 내 재산 관리의 책임을 맡은 평신도들이 교회 건축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며,¹⁰⁾ 마지막으로 제1520조 1항은 각 주교좌 도시마다 교구 직권자가 위원장을, 2명 이상의 유능하고 국법에 정통한 남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교구 재산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¹¹⁾

이처럼 1917년 법전에서 평신도는 교계 구조 안에서 가장 하부에 위치하며, 제한적으로 성직자를 대신하는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의 평신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공의회”라고 표현될 만큼, 평신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된 공의회였다. 아울러 이러한 공의회의 가르침은 1983년 법전의 교의적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교회적 쇄신은 교회와 세상에서의 평신도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재발견하도록 만들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사명에 동참하는 충실한 교회 구성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다른 구성원과 함께 교회를 세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¹²⁾

9) Cfr. can.1448 del Codice del 1917: “*Ius patronatus est summa privilegiorum, cum quibusdam oneribus, quae ex Ecclesiae concessione competunt fundatoribus catholicis ecclesiae, cappellae aut beneficii, vel etiam eis qui ab illis causam habent.*”

10) Cfr. can.1183 §1 del Codice del 1917: “*Si alii quoque, sive clerici sive laici, in administrationem bonorum alicuius ecclesiae cooptentur, iidem omnes una cum administratore ecclesiastico, de quo in can. 1182, aut eius vicem gerente, eoque praeside, constituunt Consilium fabricae ecclesiae.*”

11) Cfr. can.1520 §1 del Codice del 1917: “*Ad hoc munus rite obeundum quilibet Ordinarius in sua civitate episcopali Consilium instituat, quod constet praeside, qui est ipsemet Ordinarius, et duobus vel pluribus viris idoneis, iuris etiam civilis, quantum fieri potest, peritis, ab ipso Ordinario, audito Capitulo, eligendis, nisi iure vel consuetudine peculiari iam alio aequivalenti modo legitime fuerit provisum.*”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문헌은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이하 ‘교회 헌장’)과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이하 ‘평신도 교령’)이다. ‘교회 헌장’은 교의적 측면에서의 확실한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평신도 교령’은 교의적 측면을 바탕으로 하여 실용적이고 응용적인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평신도에 관한 공의회 of 이해를 이 두 가지 문헌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다른 몇몇 문헌에서도 평신도에게 부여되는 임무가 간헐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¹³⁾

2.1.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에 따른 개념

‘교회 헌장’ 제30항은 ‘교회 안의 평신도’에 관해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현대 교회가 평신도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현대의 특수 환경 안에서의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더 깊은 숙고를 요구하고 있다.¹⁴⁾

다음으로 제31항은 ‘평신도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평신도는 성직자와 수도자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며,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여,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⁵⁾ 아울러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 안에서 자신을 성화시키고, 세상을 성화시켜야 한다고 그들의 임무를 밝히고 있다.¹⁶⁾

12) Cfr. L. Navarro, *Il fedele laico*, in: Aa. Vv.,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II*, III ed., Roma, 2001, p.141.

13) Cfr. G. Canobbio, *Laici o Cristiani?: Elementi storico-sistematici per una descrizione del cristiano laico*, Brescia, 1992, p.213.

14) Cfr. D. Vitali, *Lumen gentium: Storia/Commento/Recezione*, Roma, 2012, pp.95-96.

15) Cfr. G. Ghirlanda, *Il diritto nella Chiesa mistero di comunione: Compendio di diritto ecclesiale*, Roma, 1990, 113; Cfr. A. Del Portillo, *Laici e fedeli nella Chiesa*, Milano, 1999, pp.156-159.

16) Cfr. G. Canobbio, p.230.

이를 위해 평신도는 교계 사도직과 더 직접적인 협력을 하도록 불릴 수 있으며, 그들이 영성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어떤 교회 임무를 교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규정한다.¹⁷⁾

2.2. 「평신도의 사도직에 관한 교령」에 따른 생각

‘평신도 교령’은 ‘교회 헌장’에서의 평신도에 대한 언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또 이런 언급을 구체화하고 있다.¹⁸⁾

먼저 제2항에서는 교회의 설립 목적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목적을 위한 그리스도교 신비체의 모든 활동을 사도직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지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사도직을 실천한다고 언급한다. 즉, 평신도는 교회와 세상에서 복음화와 성화를 위한 사도직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⁹⁾

평신도 사도직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서 나오는 것이며, 사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본질적으로 사도직을 위한 소명이다.

제6-8항에서는 이러한 사도직의 3가지 목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복음화와 성화 사도직”에서, 평신도들에게는 복음화와 성화 사도직을 수행할 기회가 무수히 열려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증거와 초자연적 정신을 실천하는 선행을 통해 드러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참된 사도직은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기회를 찾는 데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회”에서, 현세 사물을 이상처럼 섬기고 그에 대한 노예가 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현세 질서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껏 도와주는 것이 온 교회의 임무이므로, 평신도는 현세 질서의 개선을 고유 임무로 받아들이고, 그 질서 안에서 복음의 빛과 교회

17) Cfr. G. Canobbio, pp.240~241.

18) Cfr. A. Del Portillo, p.164.

19) Cfr. S. Lentili, *La vocazione all'apostolato*, in: Aa. Vv., *Il Decreto sull'apostolato dei laici*, Torino, 1966, pp.141~142.

정신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확고하게 바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천, 특히 자선 활동”에서, 자선 활동은 살아 있는 사랑의 표현이자 그리스도인적인 표징임을 강조하며, 순수한 지향이 사리 추구나 지배욕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즉,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직무, 즉 사도직을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ㄱ) 말과 삶의 증거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ㄴ)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를 위한 노력을 자신의 역량 안에서 가능한 꾸준히 지속하기. ㄷ) 사심 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려는 사랑을 실천하기.

2.3. 그 밖의 공의회 문헌에서의 언급들

이 밖에도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현장」(이하 ‘사목 현장’)과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이하 ‘선교 교령’)에서도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사목 현장’ 제43항에서는, 세속의 직무와 활동이, 비록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평신도들의 고유한 영역임을 밝히며, 이 영역에서 그들이 고유한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하나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들게 하여야 할, 현세의 시민 생활에 하느님의 법을 새기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일에서 인간 사회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²⁰⁾

다음으로 ‘선교 교령’ 제21항에서는, 평신도 사도직이 교계와 함께 존재하고 활동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참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20) Cfr. G. Caracciolo, *Spiritualità e laicato nel Vaticano II e nella teologia del tempo*, pp.156-158; cfr. G. Campanini, *Gaudium et spes*, Asti, 1986, pp.96-99.

활동이 없다면, 복음이 세상 안에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제41항에서는, 평신도들이 교회의 복음화 활동에 협력하고, 증인이며 살아 있는 도구로서 교회의 구원 사명에 참여한다고 이야기한다.

결론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서는 평신도가 세상 안에 존재하며, 세상 사람들과 외적으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생활과 행동과 희망 등을 통해 구분되며, 세상과 연계되어 그들의 고유한 교회적 사명을 수행하고, 현세 질서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들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이들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²¹⁾

3. 1983년 교회법전에서의 평신도

1983년 법전의 반포에 맞추어 발표된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해 교회법적으로 새롭게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의 참되고 고유한 모상을 표현하는 요소들 중에는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어야 한다. [...]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들 각자가 고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 즉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르침;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평신도들의 권리와 의무가 이 세 가지 직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제2권 “하느님의 백성”(De Populo Dei)에서는 제204-309조에서 ‘그리스도교 신자’(Christifideles)에 대해 다루고 있다.

3.1. 평신도에 관한 개념: 이분적 그리고 삼분적

1983년 법전에서는 평신도에 관해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이분법적 그리고 삼분법적 구분으로 평신도에 관한 개념을 다루고 있다. 즉 이분법적 구분(교계 조직적 구

21) Cfr. A. Del Portillo, p.170.

분)으로 성직자와 평신도를, 삼분법적 구분(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따른 구분)으로 재속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로 구분한다(제207조).²²⁾

3.2.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1983년 법전은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다루면서, 단지 그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의무와 기본적인 권리만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여러 곳에서 교회의 유일한 사명에 참여하는 평신도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수행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도 언급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평신도들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 224~231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²³⁾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3.2.1. 서문(제224조)

제224조는 도입부로서 평신도들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와 권리 이외에도 그들만의 고유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사실 모든 신자들의 공통적인 의무와 권리에 근거하여, 평신도들은 성사, 교회 직무, 교계 제도의 구성,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²⁴⁾ 이런 측면에서 평신도들은 교회의 법 체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의 의무와 권리에 근거한 실질적 평등을 누리고 있다.²⁵⁾

22) Cfr. L. Navarro, *Personae e soggetti nel diritto della Chiesa: Temi di diritto della persona*, Roma, 2000, p.104; cfr. G. Dalla Torre, *Considerazioni preliminari sui laici in Diritto canonico*, Modena, 1983, p.15.

23) Cfr. G. Dalla Torre, *Considerazioni preliminari sui laici in Diritto canonico*, p.39.

24) Cfr. G. Ghirlanda, *Il diritto nella Chiesa mistero di comunione: Compendio di diritto ecclesiale*, p.115.

25) Cfr. G. Dalla Torre, *Lezioni di Diritto canonico*, III ed., Torino, 2009, p.90.

3.2.2. 평신도의 특별한 사명(제225조)

제225조에서는 평신도의 전반적 의무와 특별한 의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전반적 의무는 하느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특별한 의무는 현세 사물을 처리하거나 세속 임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²⁶⁾

3.2.3. 부부의 신분에서의 평신도의 의무(제226조)

제226조에서는 평신도 부부의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들의 특수한 의무는 혼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의 건설에 노력하는 것이고, 그들의 소임은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힘써야 하는 것이다.²⁷⁾ 이와 관련해서 제835조 4항은 부모들이 부부 생활을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하고,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주선할 것을 촉구한다.²⁸⁾

3.2.4. 평신도의 자유와 자율(제227조)

제227조에서는 평신도들이 세속 국가에서 허락된 자유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하지만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의 교도권과 복음 정신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촉구한다.²⁹⁾

26) Cfr. P. Valdrini, *Comunità, persone, governo: Lezioni sui libri I e II del CIC 1983*, Roma, 2013, p.197; cfr. L. Navarro, *Persone e soggetti nel diritto della Chiesa: Temi di diritto della persona*, p.117.

27) Cfr. L. Navarro, p.119.

28) Cfr. P. Valdrini, *op.cit.*, p.198.

29) *Idid.*, p.197-198.

3.2.5. 평신도의 협력(제228조)

제228조에서는, 교회의 통치권의 행사에 있어서 평신도들이 협력할 수 있다는 제12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자들로 드러나는 평신도들이 거룩한 목자들에 의해 교회 직무와 임무에 기용될 수 있으며, 또한 평의회에서 교회 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³⁰⁾

3.2.6. 교리적 양성의 의무와 권리(제229조)

제229조에서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평신도들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조건에 맞는 교리 지식을 습득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교회 교육기관을 통해 거룩한 학문에 관한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습득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아울러 합법적인 교회 권위로부터 이러한 학문을 가르칠 위임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언급한다.³¹⁾

3.2.7. 교회 교역과 봉사(제230조)

제230조에서는 평신도들이 교회 전례 안에서 어떠한 직무를 맡을 수 있는지 언급하고 있다. 먼저 1항에서는 주교회의에서 정한 자격에 따라 남자 평신도들이 고정적인 독서직과 시종직에 기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음으로 2항에서는 평신도들이 임시적 위임으로 독서직을 수행할 수 있고, 법규범에 따라 전례에 필요한 일반적인 임무(해설자, 선창자 등)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3항에서는 교역자가 부족한 지역에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고정적으로 직무에 기용된 이들 이외에도 전례에 필요한 특수한 임무(말씀의 전례 주례, 세례 수여, 성체 분배 등)를 수행할 수 있다

30) Cfr. G. Dalla Torre, *Considerazioni preliminari sui laici in Diritto canonico*, 76; cfr. L. Navarro, p.125.

31) Cfr. L. Navarro, p.124; cfr. P. Valdrini, pp.198-199.

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직무나 임무 수행이 보수를 제공받을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고 명시한다.³²⁾

3.2.8. 교회에 봉사하는 평신도(제231조)

제231조는 교회 봉사에 헌신된 평신도들의 의무와 권리를 다루고 있다. 즉, 이러한 평신도들은 임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적합한 양성을 받고 성실히 완수할 의무가 있으며,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다.³³⁾

4. 1983년 교회법전 이후

1983년 교회법전 반포 이후에도 평신도에 관한 교회의 공식 문헌들이 꾸준히 반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88년에 반포된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과 1997년에 성직자성을 포함한 6개 성과 2개 평의회에서 공동으로 반포한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에 관한 훈령 「교회의 신비」가 있다.

4.1. 평신도 그리스도인

1987년 주교 대의원 회의의 후속 문헌인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평신도들의 교회 공동체 활동의 참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제21~23항에서는 교회 직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다룸으로써 그에 대한 혼동을 피하고 있다.³⁴⁾

먼저 제21항에서는 교회 안에 존재하고 또 실존하는 직무들은

32) Cfr. G. Dalla Torre, *Lezioni di Diritto canonico*, III ed., pp.94-95; cfr. C. Izzi, *La partecipazione del fedele laico al munus sanctificandi: I ministeri liturgici laicali*, Roma, 2001, pp.89-90; cfr.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ol.1, III ed., Bologna, 2011, p.303.

33) Cfr. P. Valdrini, *Comunità, persone, governo: Lezioni sui libri I e II del CIC 1983*, p.199.

34) Cfr. J. Beyer, *Il rinnovamento del diritto e del laicato nella Chiesa*, Milano, 1993, p.119.

모두 그 형태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한 참여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직무의 다양성과 더불어 교회적 임무와 은사의 다양성을 납득시켜 주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22항에서는 성품성사에서 유래된 직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교계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뽑아 세우신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교계 제도는 봉사 또는 섬김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성품성사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에 봉사하고 복음과 성사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교회를 모아들일 수 있는 권위와 신성한 권력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서품된 직무들은 교회 전체를 위한 은총이며, 이 직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대한 참여를 표현하고 실현하기 때문에, 세례와 견진 성사를 통해 모든 평신도에게 주어진 참여와는 다르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아울러 사목자들은 그들의 직무가 근본적으로 하느님 백성 전체를 위해 봉사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려면 직무 사제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제23항에서는 교회의 구원 사명은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실현하는 것이므로, 사목자들이 세례와 견진 성사 안에, 또한 혼인 성사 안에 그 성사적 토대를 두고 있는 평신도들의 직무와 임무와 역할을 인정하고 또 강화하여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교회의 필요 또는 유익을 위해 보편 교회법에서 정해진 규범에 따라 성품의 인호를 요구하지는 않는 어떤 역할을 평신도에게 위임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는 1983년 법전 제230조 3항³⁵⁾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지만 임무 수행만으로 성직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평신도들에 의해 보충적으로 행사되는 임무는 그 합법성을 위해서 사목자들의 공식적 위임이

35)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규정에 따라 말씀의 교역을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있어야 하고, 임무의 행사를 위해 교회 권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직무’라는 용어의 매우 무분별한 사용,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의 혼동 또는 동일시, 교회법과 규범의 준수 소홀, ‘보조성’ 개념의 임의적 해석, 평신도의 ‘성직자화’ 경향, 성품성사에 토대를 둔 봉사의 교회 구조와 병행하는 유사 교회 조직의 발생 위험 등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의 다양한 직무와 임무와 역할을 인정하고, 평신도들에게 이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사목자들은 그 근원이 세례에 뿌리박고 있음을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평신도들이 전례와 신앙 전수와 교회의 사목 구조 안에서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무와 임무와 역할도 성직자의 소명과는 다른 평신도 고유의 소명에 알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⁶⁾

4.2. 교회의 신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현재와 미래의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 사도직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늘 강조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지역 교회에서 비수품 신자들의 사제 교역 협력에 긍정적인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성직자가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에서는 가톨릭교회의 성장에 괄목할 만한 영향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에 대해 주교들과 신부들, 평신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권위 있는 답변을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일부 관행이 매우 심각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쪽으로 발전되었으며, 참된 교회 친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7년에 교황청은 「교회의 신비」라는 훈령을 통해 비수품 신자들의 사제 교역 협력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다시금 제시하였다. 이 훈령은 크게 ‘신학적 원칙’과 ‘실천 규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36) Cfr. A. Miralles, *I ministeri in riferimento ai fedeli laici e alla loro partecipazione alla vita della Chiesa*, in: Aa. Vv., *Laici verso il terzo millennio: Esortazione apost. «Christifideles laici»*, a cura di D. Tettamanzi, Roma, 1989, pp.202-206.

4.2.1. 신학적 원칙

신학적 원칙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론에서는 평신도들은 사목자들과 ‘협력하는 것’이지, ‘대신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다음으로 신학적 원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맡겨진, 그럼으로써 교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직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제직은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은 정도와 본질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³⁷⁾와 1983년 교회법전³⁸⁾의 선언을 재확인하고 있다. 즉 이 두 사제직은 직무 자체로서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지만, 각각의 사제직 자체가 지향하는 바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보편 사제직은 세례의 은총과 향주덕, 그리고 성령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실현되며, 그 범위와 대상은 세상 전체이다. 다음으로 직무 사제직은 그 자체가 보편 사제직보다 성덕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며, 하느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려는 직무이다. 달리 말하면, 직무 사제직은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사제직이므로, 보편 사제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편 성품 교역자의 수적 부족을 보충하려는 특정 관행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보편 사제직의 성격과 명확한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개념을 낳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있다. 즉 “그러한 임무의 수행이 평신도를 사목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임무가 아니라 성사적 서품이 교역을 이룬다. [...] 보충적으로 수행되는 임무는 목자들의 공식적 위임이 있어야 즉시 형식적 합법성을 지니게 되며, 그 구체적인 활동은 교회 권위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³⁹⁾ 즉, 비수품 신자들은 합법적 권

37) 참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 10항.

38) 참조: 교회법 제207조 1항.

39)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위에 의해 규정에 맞게 일부 직무에 대해서만 제한된 정도로 사목자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무 사제직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하며, 모든 개별 교회는 자기 지도자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교회 공동체든 그 자체로 지도자를 뽑거나⁴⁰⁾ 어떤 위임을 통하여 지도자를 세울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직무 사제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신학적 원칙에 근거하여 현행 교회법전에서는 평신도들이 성직자에 의해 자신들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와 임무에 기용될 수 있으며,⁴¹⁾ 특히 성직자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그들에게 맡겨진 전례 직무의 일부를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²⁾ 그렇지만 비수품 신자들의 협력이 사목 교역과 조화롭게 융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용과 법규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교리 원칙을 언제나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행 교회법 규정을 교회 전체에 일관되고 충실하게 적용하는 한편, 예외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경우의 조건을 부당하게 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4.2.2. 실천 규정

여기서는 평신도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필요한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즉 ‘교역’(ministerium)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교회 구성원이 교회와 전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명과 봉사 직무를 계속해 나가는 일을 표현하지만, ‘성품 교역’(ministerium ordinatum)과 혼

(*Christifideles Laici*, 1988.12.30.). 2항; AAS 81(1989), 369.

40) 참조: 신앙교리성, 성체성사 집전자 문제에 관하여 가톨릭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Sacerdotium Ministeriale*), n. III, 2; AAS 81(1989), 1004.

41) 참조: 교회법 제228조 1항.

42) 참조: 교회법 제230조 3항.

동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다. 나아가 성품성사로 말미암아 수행하는 ‘직무’(officium)와 ‘임무’(munus), 그리고 교회가 일시적으로 위임하여 평신도에게 맡겨진 ‘직무’(officium)는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으로 평신도에게 맡길 수 있는 구체적인 직무와 그 한계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말씀의 교역’과 ‘강론’에 있어서 성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평신도들이 교역 수행에 협력할 수 있지만, 평신도들에게는 예외적인 경우에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⁴³⁾ 강론은 오직 부제를 포함한 성직자에게만 유보되어 있다⁴⁴⁾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전례 중에 평신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개 증언’이 강론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사제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평신도가 본당 사목구의 사목수행을 하는 경우에도 편의나 ‘평신도의 진보’ 등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단지 사목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개별 교회(교구)와 본당의 조직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도 비수품 평신도가 참여할 수 있는 조직들(사목 평의회, 재무 평의회)은 결코 의결 기구가 될 수 없으며, 성직자의 결정에 대한 건의 또는 의견 제시로 그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는 걸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례 거행’에 있어서는 서품받지 않은 신자가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 예복을 입거나, 미사를 마치 주재하듯이 집전 사제에게 유보된 고유 기도문을 읊거나 고유 행동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자신의 고유한 역할에서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사제가 없을 때의 주일 전례 거행’에 대해서도, 평신도는 어떤 형태로라도 감사기도를 전례 중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교로부터 특별 위임을 받은 평신도에 한하여 명확하게 구별되는 예식서를 이용하여 전례를 거행해야 한다.

43) 참조: 교회법 제766조.

44) 참조: 교회법 제767조 1항.

나아가 필요한 경우, 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도, 이 임무는 보충적이고 비정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성체를 모시거나, 성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에서 사제들이 하는 서약 갱신이나 수도 서원 갱신, 또는 비정규 성체 분배자로 위임받은 신자들이 하는 갱신식 등에 참여하거나, 비정규 성체 분배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관행들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평신도가 병자에게 성유를 바르는 것을 금지하고, 혼인 주례는 교회법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며,⁴⁵⁾ 평신도에게 세례 집전 권한이 통상적으로 위임되어서는 안 되고, 성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회 장례식을 인도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역에 협력하는 비수품 신자들은 교회 교리를 잘 알고 윤리적 생활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세상의 복음화와 구원과 성화를 위한 교역의 협력에 합당하도록 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신자가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회법 규정들이 명확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자신의 신분에 더 적합한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형제적 공동체를 실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평신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결론

1917년 법전은 평신도에 관한 정의나 그들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단지 성직자나 수도자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정의로만 언급되었다. 그렇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계 제도와 평신도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함으

45) 참조: 교회법 제1112조.

로써, 평신도에게 일정 부분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즉 평신도는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을 이루며,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직, 그리고 왕직에 참여하고, 교회와 세상 안에서 고유한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이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평신도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이해가 기존과는 달라졌다는 걸 의미한다.

한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983년 법전은 평신도의 고유한 의무와 권리,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될 수 있는 역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신학적 쇄신은 교회와 세상 안에서 평신도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즉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는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모든 신자들의 선교 사명에 참여하고, 교회 건설에 함께할 책임이 부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3년 법전에서도 평신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평신도에 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8년의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을 참고해야 한다. 아울러 성직자가 부족한 지역을 위해 평신도에게 성직자가 수행해야 할 직무를 일부 위임하기 위한 1997년의 훈령 ‘교회의 신비’(Ecclesiae de mysterio)를 통해, 평신도에게 부여될 역할의 한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평신도에 관한 사고의 변화는 ‘수동적 주체’에서 ‘능동적 주체’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와 그 복음의 확산에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교계 제도와 평신도 사이의 협력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AAS 9, Pars II, 1917, 11~456.
-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AAS 75, Pars II, 1983, 1~30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개정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8.
-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12.30.); AAS 81(1989), 393~521.
- 성직자성, 평신도평의회, 신앙교리성, 경신성사성, 주교성, 인류복음화성, 수도회성, 교회법해석평의회,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Ecclesiae de Mysterio*, 1997.8.15.); AAS 89(1997), 852~877.
- Beyer, J., *Il rinnovamento del diritto e del laicato nella Chiesa*, Milano, 1993.
- Campanini, G., *Gaudium et spes*, Asti, 1986.
- Canobbio, G., *Laici o Cristiani?: Elementi storico-sistematici per una descrizione del cristiano laico*, Brescia, 1992.
- _____, *Spiritualità e laicato nel Vaticano II e nella teologia del tempo*, Milano, 2008.
- Chiappetta, L.,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ol. 1, III ed., Bologna, 2011.
- Dalla Torre, G., *Considerazioni preliminari sui laici in Diritto canonico*, Modena, 1983.
- _____, *I laici*, in: Aa. Vv., *La nuova legislazione canonica*, Roma, 1983.
- _____, *Lezioni di Diritto canonico*, III ed., Torino, 2009.
- Del Portillo, A., *Laici e fedeli nella Chiesa*, Milano, 1999.
- Ghirlanda, G., *Il diritto nella Chiesa mistero di comunione: Compendio di diritto ecclesiale*, Roma, 1990.
- Lentili, S., *La vocazione all'apostolato*, in: Aa. Vv., *Il Decreto sull'apostolato dei laici*, Torino, 1966.
- Miralles, A., *I ministeri in riferimento ai fedeli laici e alla loro partecipazione alla vita della Chiesa*, in: Aa. Vv., *Laici verso il terzo millennio: Esortazione apost. «Christifideles laici»*, a cura di D. Tettamanzi, Roma, 1989.
- Navarro, L., *Il fedele laico*, in: Aa. Vv.,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II*, III ed., Roma, 2001.
- _____, *Persone e soggetti nel diritto della Chiesa: Temi di diritto della*

persona, Roma, 2000.

Izzi, C., *La partecipazione del fedele laico al munus santificandi: I ministeri liturgici laicali*, Roma, 2001.

Valdrini, P., *Comunità, persone, governo: Lezioni sui libri I e II del CIC 1983*, Roma, 2013.

Vitali, D., *Lumen gentium: Storia/Commento/Recezione*, Roma, 2012.

국문초록

초대 교회부터 평신도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평신도에 관한 생각과 그들의 지닌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특히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그런 평가는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917년 교회법전까지는 아직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가톨릭교회는 평신도를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원으로서 간주하기 시작했다. 즉 그들은 세례성사를 통해 보편 사제직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그리고 왕직에 참여하여 교회와 세상을 향한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이들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1983년 교회법전을 비롯한 여러 교회 문헌들은 평신도들에게 부여된 의무와 권리, 그리고 그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확인한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무분별하게 그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는 이들로써, 그들이 지닌 고유한 신분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교회 안에서의 직무와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완성과 세상의 복음화, 그리고 선교 사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평신도, 교회법전, 교회 현장, 평신도 교령, 평신도 그리스도인, 교회의 신비.